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출자 : 이광호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2117호

다. 제출일자 : 2021. 1. 27.

라. 회부일자 : 2021. 2. 9.

2. 서울특별시시장 발의안

가. 제출자 : 이영실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2146호

다. 제출일자 : 2021. 2. 4.

라. 회부일자 : 2021. 2. 9.

II. 제안사유

1.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안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배달 사업이 급성장하고 이를 위한 이륜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배달 횟수에 따라 배달 운전원들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 되고 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나홀로의 삶이 늘어나다 보니 이동 수단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 및 횡단보도를 일반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어 보행 환경을 크게 위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임

2.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안

- 어린이 통합버스의 과도한 쉐어링으로 인하여 하절기 버스 이용아동의 사망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질식사고 예방 등 어린이 통합버스 이용 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켜야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시장의 책무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

2.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제3항 신설)

Ⅳ. 참고사항

1.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16. ~ 2021. 2. 23.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수정 가결

-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교통수단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에 이용이 급증하여, 이용질서 및 안전규칙 등이 모호한 상황임
 - '20.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주행해야하나, 현재 이용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임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법규가 마련 중에 있는바(소관상임위 심사)
 -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구체적 통행제한 방법은 상위 법령 제정 이후 재검토 필요

1) 교통운영과-2424호(2021.2.16.)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2.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16. ~ 2021. 2. 23.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원안가결

○ 동 개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조례에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 하고자 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²⁾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용어 정의와 운행규정을 마련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신설하고 「교통안전법」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용어정의를 인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 생략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 할 것임

■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4조 관련)

○ 최근 각종 배달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짧은 거리에 대한 이동성과 휴대성이 뛰어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보도통행과 무단방치 등으로 사고위험⁴⁾과 보행 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이륜자동차⁵⁾, 원동기장치자전거⁶⁾, 개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4) 년도별 가해운전자 차종별 사고현황

가해운전자 차종별	사고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륜차	사고건수	12,654	13,076	13,730	15,032	17,059
	사망자수	401	428	406	410	388
	부상자수	15,172	15,773	16,720	18,621	21,807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건수	6,589	5,906	4,157	2,246	1,937
	사망자수	215	186	121	68	37
	부상자수	7,776	6,991	4,986	2,670	2,390
개인형이동수단 (PM)	사고건수	-	-	117	225	407
	사망자수	-	-	4	4	7
	부상자수	-	-	124	238	434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6)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인형 이동장치⁷⁾, 자전거⁸⁾를 “차”로 정의하고 있고, 동 법 제13조에 따라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 법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동 조례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보행자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 상위 법령의 통행 방법을 준수토록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이 추진 중⁹⁾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법령 제정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9) '20.09.17.일 제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22인)

'20.11.13.일 제안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과도한 썬팅으로 인하여 하절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 등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 썬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2조¹⁰⁾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¹¹⁾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교통수단안전점검

10)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등

1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등

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통학 버스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차내 방치 및 질식사 고 등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¹²⁾에서는 일반적인 차량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¹³⁾과 별도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¹⁴⁾에 대해서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7.)¹⁵⁾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자동차 검사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과도한 썬팅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1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7.) 제80조(검사의 실시등)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